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
○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3. 제안이유

○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약칭의 사용(안 제5조)

– 도 →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

○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5조, 제8조)

–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→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
– 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→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

-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→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
- 아닌 → 않은
- 범위내에서 → 범위에서
- 관하여 필요한 → 필요한

5. 검토의견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